#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93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소병훈·백승아·문정복

이기헌 • 안태준 • 안호영

박지원 · 윤종군 · 박 정

허 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 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합산한 개발사업의 규모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2ㆍ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준용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7조 및 제7조의2"를 "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제2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
	역에서 추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 ·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산한 개발 사업의 규모가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하나의 대규 모 개발사업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	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 7조의5 및 제7조의6을 준용한 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2. (생략)
- 3. <u>제7조 및 제7조의2</u>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4. ~ 7.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 <sup>7</sup> 용) ①・② (생 략)
  -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생략)
  -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 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 5.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u>
<u>3</u>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
용) ①・② (현행과 같음)
3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2 및 제7조의3
3 ~ 5 (현행과 같음)